



안전, 보건관리 지침

표준번호	MP-01-01
제/개정일	2023.08.17
개정번호	7
PAGE	1/22

REV. NO	제 · 개정일	Page	개정 조항	개 정 사 유						
0	1995.11.30			안전관리규정 제정.						
1	1998.10.28			전면수정.						
2	1999.05.24		10-3-1 별첨10.12	1.안전점검일지를 안전보건점검 Check Sheets 로 변경 2.재해분석 시기변경. 3.양식변경.						
3	2001.08.24		7-6-4, 7-6-5 10-4-4 10-4-5 10-5-3	1.별첨을 양식으로 일부 변경. 2.평가 및 LV송부 삭제. 3.자해행위 추가. 4.마약류 추가. 5.(취업제한) 마약류 추가. 6.안전수칙 첨부삭제(첨부14-24).						
4	2003.12.30			1.TS16949(2002)전환 으로 인한 양식변경.						
5	2005.04.13		4-6-5 11항	특정별교육에 대한 내용 삽입 특정별안전지침(13가지 첨부) 상호 변경						
6	2007.01.03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변경전</td> <td>변경후</td> </tr> <tr> <td>DDSK</td> <td>DPSK</td> </tr> <tr> <td>한국델파이디젤(주)</td> <td>델파이파워트레인(주)</td> </tr> </table>	변경전	변경후	DDSK	DPSK	한국델파이디젤(주)	델파이파워트레인(주)
변경전	변경후									
DDSK	DPSK									
한국델파이디젤(주)	델파이파워트레인(주)									
7	2023.08.17		1-1-2 2-8 4-10 4-15 4-16 6-3 6-4 별표 1 ~ 10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기준 추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항목 추가 안전검사 항목 추가 사업주의 작업중지 항목 추가 근로자의 작업중지 항목 추가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항목 추가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항목 추가 별표 1 ~ 10 첨부파일 추가						

작성	검 토												확인	승인	등록	
	Q.M.	생산	구매	품보	기술	PC&L	SDSQ	공무	공구	총무	경리	영업				전무

접수일	등록번호
------------	-------------



안전, 보건관리 지침

표준번호

MP-01-01

제/개정일

2023.08.17

개정번호

7

PAGE

2/22

Process 관리자

공무부서장

관리부서

공 무 과

관련부서

전 부서

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부라다워너 유한책임회사(이하 “당사”라고 한다)의 전 사원에게 적용하며 회사 방문객, 출입자 및 하도급 업체에도 준용하며 관계법이 정한 것 외에는 본 규정에 적용한다.

목적

당사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하고 재산 보존을 도모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조성으로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 안전은 특별 안전에 관한 전문적 의견을 수렴하고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총칙

1-1. 용어의 정의

1-1-1.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1-1-2.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1-1-3.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

1-1-4.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1-5. 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1-1-6.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1-1-7. 도급인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한다.

1-1-8.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1-1-9.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표준번호	MP-01-01
제/개정일	2023.08.17
개정번호	7
PAGE	3/22

1-1-10.건설공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 「전기공사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 「소방시설공사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1-1-11.사고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발주공사 근로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의 장애 등의 인명피해나 회사 또는 임직원 등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1-1-12.안전관리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정한 상태나 조건 또는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하며, 회사 임직원의 안전관리(이하"산업안전"이라 한다), 회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이하"건설안전"이라 한다), 회사 시설물의 안전관리(이하"시설안전"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1-1-13.보건관리

임직원의 건강유지·증진 및 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1-1-14.안전보건관계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말한다.

1-1-15.법정 안전관계자

안전보건관계자외에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직책에 선임된 자를 말한다.

1-1-16.작업장안전

생산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계적·물리적 안전을 말하고 그 분류는 소프트, 하드, 파이널, 인젝타가공, 조립, VCP&OCV, IAFM, MCT 등으로 구성한다

1-1-17.압축기 및 압력용기의 안전

기계의 동력을 얻고자 공기 압축기로 압축하여 탱크에 저장하고 사용처(기계)까지의 생산, 저장, 이송, 사용까지의 안전한 이용을 말한다.

1-1-18.교류 아크 용접기 안전

교류 전력을 이용하여 용접기에 의하여 아크를 발생시켜 사용하는 용접작업의 안전을 말한다.

1-1-19.가스용접(절단)작업 안전

고압 가스와 아세틸렌의 조합으로 사용하는 용접 및 절단 작업을 말한다.

1-1-20.유해물질 관리 및 사용안전

고체, 액체연료 및 법에 관한 유해물질의 것을 말한다.

1-1-21.드릴 작업 안전(전동공구)

일정한 공구를 이용하여 가공 하고자 하는 크기의 구멍을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1-1-22.지게차작업 및 추락안전(중량물,고소작업 사다리)

중량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기계를 이용하여 상,하,좌,우로 이동 운반하는 것을 말하고 사다리 및 고소작업은 높은곳에 오르거나 높은곳에서 작업 하는 것을 말한다.

1-1-23.레이저작업 안전

레이저를 이용하여 절단, 마킹(인쇄)등을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표준번호	MP-01-01
제/개정일	2023.08.17
개정번호	7
PAGE	4/22

1-1-24. 밀폐공간작업 안전

밀폐공간이라함은 산소 농도가 18%이하로 떨어지며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공간을 말한다.

1-1-25. 전기, 기계 작업의 안전

전기의 이용으로 동력 또는 작업의 수단으로 활용, 사용하는 작업의 안전을 말한다.

1-1-26. 청력 소음 안전

기계의 동작으로 현저하게 높은 소음(85dB)이상의 소음으로 작업자 및 방문객 등에 소음으로 인한 재해의 위험성이 있어 이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1-1-27. 안전보건진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1-28.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안전보건경영방침

1-2-1.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예산·인력·제도 등 운영·관리에 있어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사항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1-2-2. 대표이사는 회사에 적합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담아 안전보건경영현장으로 간결하게 문서화 하고 시행일을 표기 및 자필 서명을 하여 사내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1-2-3. 안전관계자는 매년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의 경영 환경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경영방침을 변경하여야 하며, 달성목표를 수치화 하여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1-2-4. 근로자 등은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3. 사고예방 책임과 의무

회사 전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사고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3-1. 전 근로자는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회사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3-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 및 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3-3.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1-3-4. 안전 및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3-5. 회사는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 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2-1. 안전보건조직

표준번호	MP-01-01
제/개정일	2023.08.17
개정번호	7
PAGE	5/22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조직은 **(별표1)**과 같으며, 사업주는 **(별표1)**의 조직을 총괄하는 자로서 이 규정 제1조제1장제2호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1-1.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조치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1-2.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총괄하는 자로 안전보건관계자 및 법정안전관계자를 선임하고 관계 기관에 이를 신고 또는 보고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계자의 선임기준은 **(별표2)**와 같다.

2-2.안전보건관리책임자

2-2-1.회사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대표이사로 한다.

2-2-2.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별표2)**와 같다.

2-2-3.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2-3.관리감독자

2-3-1.회사의 관리감독자는 각 라인별 생산부 차장(박순영 차장, 장순준 차장, 김경도 차장, 성원식 차장)으로 하며 관리감독자의 직무는 **(별표2)**와 같다.

2-3-2.회사는 관리감독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2-4.안전관리자

2-4-1.회사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안전관리자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2-4-2.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별표2)**와 같다.

2-4-3.회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일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5.보건관리자

2-5-1.회사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보건관리자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2-5-2.보건관리자의 직무는 **(별표2)**와 같다.

2-5-3.회사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일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6.산업보건의

표준번호	MP-01-01
제/개정일	2023.08.17
개정번호	7
PAGE	6/22

2-6-1.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2-6-2. 산업보건의의 직위는 **(별표2)**와 같다.

2-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7-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은 근로자 대표가 대표이사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로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위촉을 추천할 수 있다.

2-7-2. 명예감독관의 직위는 **(별표2)**와 같다.

2-7-3. 회사는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은 한 것을 이유로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등 **(별표3)**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8-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2-8-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해당 사업의 대표이사(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해당 사업의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2-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등

2-9-1.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2-9-2.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9-3.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대표이사,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2-9-4.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표준번호	MP-01-01
제/개정일	2023.08.17
개정번호	7
PAGE	7/22

*그 밖의 토의사항

2-10.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2-10-1.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2-10-2.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2-11.회의 결과 등의 공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3.안전보건교육

3-1.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3-1-1.주관부서는 매년 연간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매년 교육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1-2.소관부서는 주관부서의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서 여건에 적합한 교육 계획을 별도 실시할 수 있다.

3-1-3.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타 법령에 적용되는 소방·가스·전기·승강기 등의 관련 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3-2.정기안전보건교육

3-2-1.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별표4)**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2-2.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별표4)**와 같다.

3-3.신규 채용 시 교육

3-3-1.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는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때에는 작업 투입 전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별표4)**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3-3-2.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별표4)**와 같다.

3-4.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3-4-1.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는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작업 배치 전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별표4)**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3-4-2.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별표4)**와 같다.

표준번호	MP-01-01
제/개정일	2023.08.17
개정번호	7
PAGE	8/22

3-5. 특별안전보건교육

3-5-1.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별표4)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별표4)와 같다.

3-5-2.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3-5-3.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3-5-4.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별표4)와 같다.

3-6. 물질안전보건교육

3-6-1.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서 정하는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 특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3-6-2. 물질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별표4)와 같다.

3-7. 직무교육

3-7-1. 실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 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3-7-2.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시간과 시기는 (별표4)와 같다.

3-8. 안전보건교육강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3-8-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3-8-2. 관리감독자
- 3-8-3. 안전관리자
- 3-8-4. 보건관리자
- 3-8-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3-8-6. 산업보건의
- 3-8-7.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3-8-8.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3-9. 교육 방법

3-9-1.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가 주관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표준번호	MP-01-01
제/개정일	2023.08.17
개정번호	7
PAGE	9/22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9-2.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으로 실시한다.

3-10.기록·보존

3-10-1.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교육 결과서류(교육일지,서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3-10-2.회사는 교육 관계 서류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4.작업장 안전관리

4-1.안전보건 계획수립 및 실행

4-1-1.회사는 근로자와 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1-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 계획
-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4-1-3.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4-2.전기설비 안전

4-2-1.실무부서의 장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위탁하여야 한다.

4-2-2.실무부서의 장은 전기설비의 고장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방지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하고 고장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확대 방지 및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2-3.전기설비(수배전반, 그 밖의 고압전기 등)가 설치된 장소에는 모든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하에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4-2-4.기타 전기설비 관련 안전을 위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제1절**을 따른다.

4-3.소방시설 안전

4-3-1.실무부서의 장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해당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계획서 작성
- *자위소방대 조직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취급의 감독
- *기타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표준번호	MP-01-01
제/개정일	2023.08.17
개정번호	7
PAGE	10/22

4-3-2. 실무부서의 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밀 점검을 포함)을 실시하여야 한다.

4-4.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4-4-1. 실무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에 따라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된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4-4-2. 실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필요한 안전 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4-4-3. 실무부서의 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4-4. 실무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합격표시필증을 알아보기 쉽게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4-5. 실무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 등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구매할 경우 인증 또는 신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5. 법령요지 등의 게시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4-6. 안전장구 및 보호구

4-6-1. 안전관리자는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고 총무부장은 안전복장을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4-6-2.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안전관리자로부터 보호구를 지급 받거나 관리감독자로부터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6-3. 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별표5)** 보호구지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지급한 보호구의 교체주기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화 등 직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호구는 교체주기까지 개인이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4-6-4. 안전관리자는 보호구를 구입 할 때에는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제품으로 구입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검정대상이 아니거나 검정이 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6-5. 안전관리자는 보호구를 공동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6-6. 안전보호구 및 안전복장의 지급관리기준은 **ESP 07-15 안전보호구 착용 지침**과 같다.

4-7.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4-7-1.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장 내에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 및 감독을 하는 경우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ESP-07-19 밀폐공간관리 지침서)**

표준번호	MP-01-01
제/개정일	2023.08.17
개정번호	7
PAGE	11/22

4-7-2.실무부서의 장은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보건규칙 제619조부터 제625조 및 제636조부터 제644조**에 따라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 환기, 대피용 기구 비치 등의 조치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8.안전인증

4-8-1.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별표6**)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및 방호장치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4-8-2.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8-3.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4-8-4.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4-8-5.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모델명·제조수량·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8-6.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8-7.안전인증의 신청 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9.자율 안전 확인의 신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10.안전 검사

4-10-1.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주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별표6**)

4-10-2.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표준번호	MP-01-01
제/개정일	2023.08.17
개정번호	7
PAGE	12/22

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4-11. 안전검사의 주기

4-11-1.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별표6)**과 같다.

4-12. 안전 · 보건조치

4-12-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굴착,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4-12-2.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 및 점검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토사 · 건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4-12-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 산소결핍 ·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 · 유해관선 · 고온 · 저온 · 초음파 · 소음 · 진동 ·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 · 채광 · 조명 · 보온 · 방습 ·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4-12-4. 제3항에 따라 회사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4-12-5. 회사는 건설, 물품, 용역계약에 따른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 ·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4-13. 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4-13-1. 안전관리자는 유해 · 위험 작업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4-13-2. 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4-13-3. 다음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 *기계 · 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4-14.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4-14-1. **(별표7)**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작업장 외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4-14-2.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이를 해당 장소에 출입금지표시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4-15. 사업주의 작업중지

4-15-1. 실무부서의 장은 수행 사업 및 소관 발주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업 및 공사를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15-2. 실무부서의 장은 폭염·한파,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 관리대상 사업·시설에서 작업하는 현장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작업하거나, 필요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 보호용품을 지급하거나, 실외 작업의 경우에는 실내 작업으로 전환하여 작업할 수 있다.

4-16. 근로자의 작업중지

4-16-1.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4-16-2.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실무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16-3. 실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16-4. 실무부서의 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4-17. 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4-17-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지시·안내·금지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4-17-2.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8)**에 따른다.

4-17-3.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할 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된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4-18.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

4-18-1.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18-2. 안전보건점검의 점검횟수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회/1일)

4-18-3.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 및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

표준번호	MP-01-01
제/개정일	2023.08.17
개정번호	7
PAGE	14/22

하고 시정,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4-19. 안전 작업 허가서 발급 및 이행

4-19-1.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또는 공사현장(지배 관리 장소도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작업허가서를 발급, 승인 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 * 화기작업
- * 전기(정전)작업
- * 밀폐공간작업
- * 고소작업
- * 굴착작업
- *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 * 그 밖에 실무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

4-19-2. 안전관리자는 **ESP-07-18 안전작업허가 지침에 따라 (별표9)**를 발급 및 보관 관리 해야 한다.

4-20. 안전보건진단

4-20-1.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4-20-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4-20-3.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4-20-4.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20-5.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1. 교통재해 예방

4-21-1. 실무부서의 장은 사업장 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이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도록 속도제한 표지판 설치, 과속방지턱 주의 표지판 설치 등 사업장 내 교통재해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21-2. 실무부서의 장은 구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표시되어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이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21-3. 근로자 등은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4-22. 비상조치계획

4-22-1. 실무부서의 장은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표준번호	MP-01-01
제/개정일	2023.08.17
개정번호	7
PAGE	15/22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상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4-22-2.비상조치계획, 피난 및 대응훈련, 비상연락시스템 구축은 회사의 **ESP-08 비상사태관리 프로세스**를 참조한다.

5.작업장 보건관리

5-1.보건조치

보건관리자 및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속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5-1-1.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 흙 · 미스트 · 산소결핍 ·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5-1-2.방사선 · 유해가스 · 고온 · 저온 · 초음파 · 소음 · 진동 ·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5-1-3.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5-1-4.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5-1-5.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5-1-6.환기 · 채광 · 조명 · 보온 · 방습 ·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5-2.유해인자 관리

보건관리자 및 안전관리자는 발암물질 등 유해인자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에 따라 유해인자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3.작업환경측정

5-3-1.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5-3-2.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5-3-3.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5-3-4.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5-3-5.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5-3-6.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 설비의 설치 · 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3-7.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5-3-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4. 휴게시설의 설치

5-4-1.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4-2.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5. 근로자 건강진단

5-4-1.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자율건강진단

5-4-2.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시기, 대상 및 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5조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5-4-3.보건관리자 및 안전관리자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4-4.근로자는 회사에서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5-4-5.근로자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5.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5-5-1.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5-5-2.제1항의 관리감독자는 **(별표7)**에 따른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근로자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6.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급제한

5-6-1.실무부서의 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별표10)**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6-2.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급제한은 **(별표10)**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준번호	MP-01-01
제/개정일	2023.08.17
개정번호	7
PAGE	17/22

5-7.근로시간 연장제한

5-7-1.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7-2.실무부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5-8.질병자의 취업 제한

5-8-1.안전 사고로 인하여 요양, 완치 후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재취업 요청을 할 시 이를 관리 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재 취업 시킬 수 있다.

5-8-2.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보아 동 작업에 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최고책임자가 재 취업을 허가 하면 재 취업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 적정시간을 결정하여 재 취업 시킨다.

5-8-3.마약 및 마약류에 속하는 약물에 중독되어 형사처벌 및 치료 중인 자는 취업을 제한한다.

5-9.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5-9-1.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대상 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직원이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항상 게시 또는 갖추어두거나,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5-9-2.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이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5-9-3.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시행규칙 **제170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10.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5-10-1.회사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5-10-2.회사는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표준번호	MP-01-01
제/개정일	2023.08.17
개정번호	7
PAGE	18/22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10-3.근로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직원에 대하여 의학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11.근로자 건강 유지 및 증진

5-11-1.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11-2.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재난 또는 중대사고 발생 사업장의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업무 트라우마 등 건강장해 발생 시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12.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5-12-1.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의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12-2.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성별·연령,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12-3.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등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12-4.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발산하는 장소 또는 유해물질을 취급·보관하는 장소와 분리된 곳에 설치해야 한다.

6.도급사업 안전 및 보건 관리

6-1.도급의 제한

6-1-1.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6-1-2.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6-2.안전보건총괄책임자

6-2-1.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6-2-2.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6-2-3.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3.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표준번호	MP-01-01
제/개정일	2023.08.17
개정번호	7
PAGE	19/22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6-4.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6-4-1.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작업장 순회점검
-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 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가.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나.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 *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 아저조치 및 버거조치 등의 확인
- *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흔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7.위험성평가

7-1.목적

7-1-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 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2.위험성평가 실시주체

7-2-1.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7-2-2.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수급사업주"라 한다)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7-2-3.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7-3.위험성평가 대상

7-3-1.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이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7-3-2.사업주는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하"아차사고"라 한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7-3-3.사업주는 사업장 내에서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제15조제2항**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밖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제15조제3항**의 위험성평가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7-4.근로자 참여

7-4-1.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7-5.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실행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실행 주기, 문서보존 기한 등은 **ESP-02 리스크평가프로세스**를 따른다.

7-6. 위험성평가의 공유

7-6-1.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관 관련된 유해·위험요인
- *제1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 *제1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 *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7-6-2.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8-1. 재해발생시의 긴급조치

8-1-1.근로자가 작업 중에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동료 근로자 및 관계자는 즉시 재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8-1-2.연쇄 재해사고 발생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 되었을 시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8-1-3.재해발생 시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줄이고, 신속한 보고, 기동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표준번호	MP-01-01
제/개정일	2023.08.17
개정번호	7
PAGE	21/22

8-2. 사고조사 및 보고

8-2-1. 재해발생현장은 사고지점상태에서 원 상태를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관계자 또는 보건관계자의 지시가 있을 때 까지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8-2-2. 사고보고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은 **ESP-07-13 사고보고 및 조사 지침**을 따른다.

9. 자율안전활동

9-1. 자율안전활동

9-1-1. 회사는 모든 직원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흥미를 가지도록 자율안전활동을 실시하여 안전보건의식의 함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9-1-2.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무재해운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사업장 무재해 운동 추진 지침은 **ESP-11 안전보건관리 프로세스**를 따른다.

9-1-3.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9-2. 안전제안제도 등

9-2-1. 회사는 자율안전활동에 따른 안전관련 개선과제 제안을 위한 안전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9-2-2. 근로자는 휴게실에 비치된 건의함을 통해 안전 관련 제안을 할 수 있다.

10. 보칙

10-1. 포상

10-1-1.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근로자, 무재해 목표달성일을 달성 할 때 안전에 관한 지대한 공이 있는 자를 안전보건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포상한다.

10-2. 벌칙(징계) 조치

규정, 관련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당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근로자에게는 징계를 상신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0-2-1. 각종 안전(재해)사고의 은폐·허위보고, 태만 등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 시킨 자.

10-2-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계자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10-2-3.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10-2-4. 안전장치 및 시설물을 무단으로 제거, 훼손한 자.

10-2-5. 지급된 보호구 미 착용으로 안전사고를 발생 시킨 자.

10-2-6. 작업 중 위험한 장난, 폭행 등의 행위를 한 자.

10-2-7. 사고경위를 은폐,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한 자.

10-2-8.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교육에 상습적으로 불참하는 자.

10-2-9. 기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며 안전사고를 다발 발생 시키는 자.

10-3. 문서보존연한

10-3-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기록: 3년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3년

표준번호	MP-01-01
제/개정일	2023.08.17
개정번호	7
PAGE	22/22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2년
-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3년
-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3년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5년(단,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30년)
-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3년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2년
-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3년

10-3-2. 제1항에 의해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 중 전산 입력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 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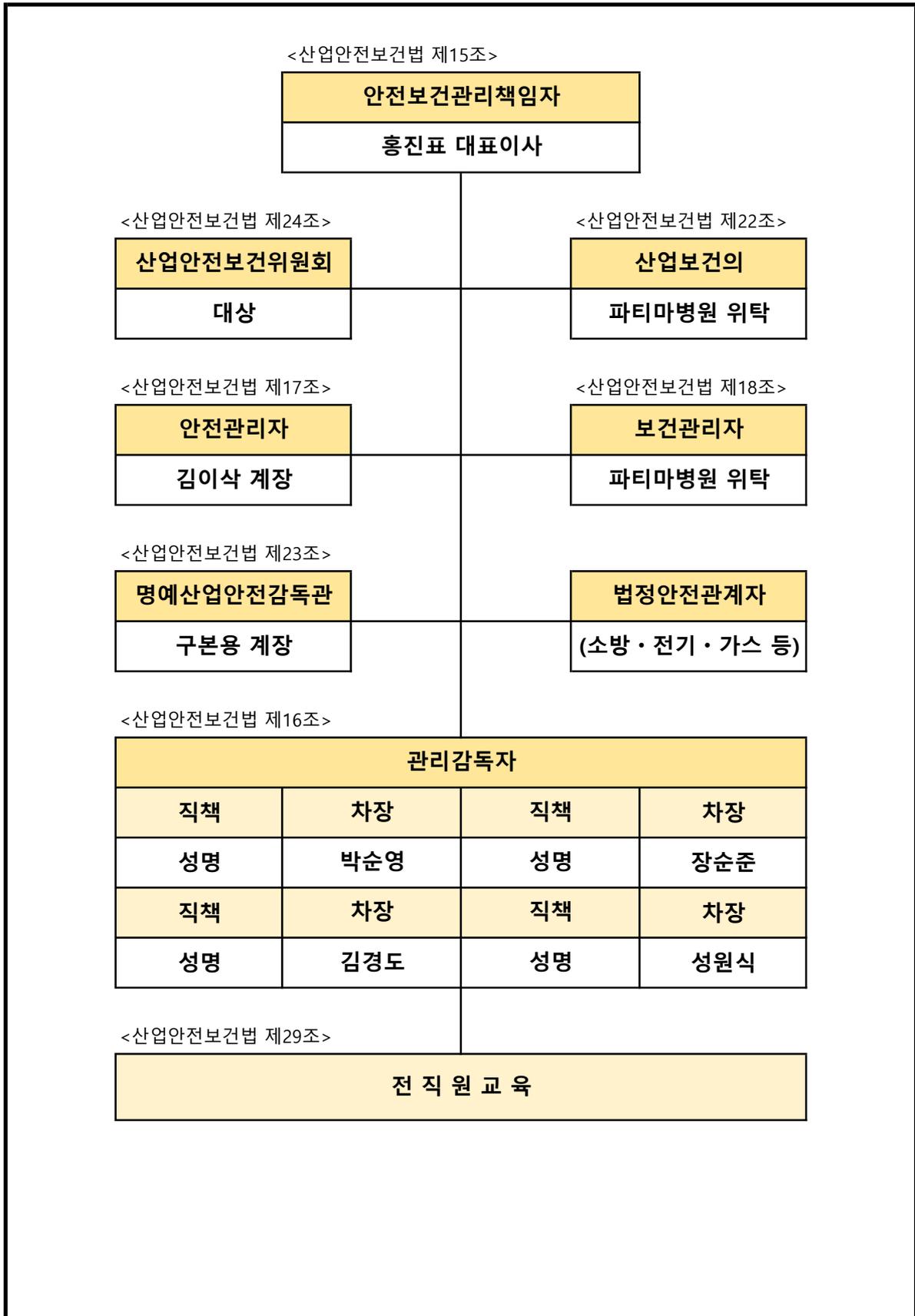
10-4. 규정의 관리

10-4-1.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개정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10-4-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 규정을 개정하도록 한다.

【별표 1】

안전보건관리조직도



안전보건관계자의 선임기준 및 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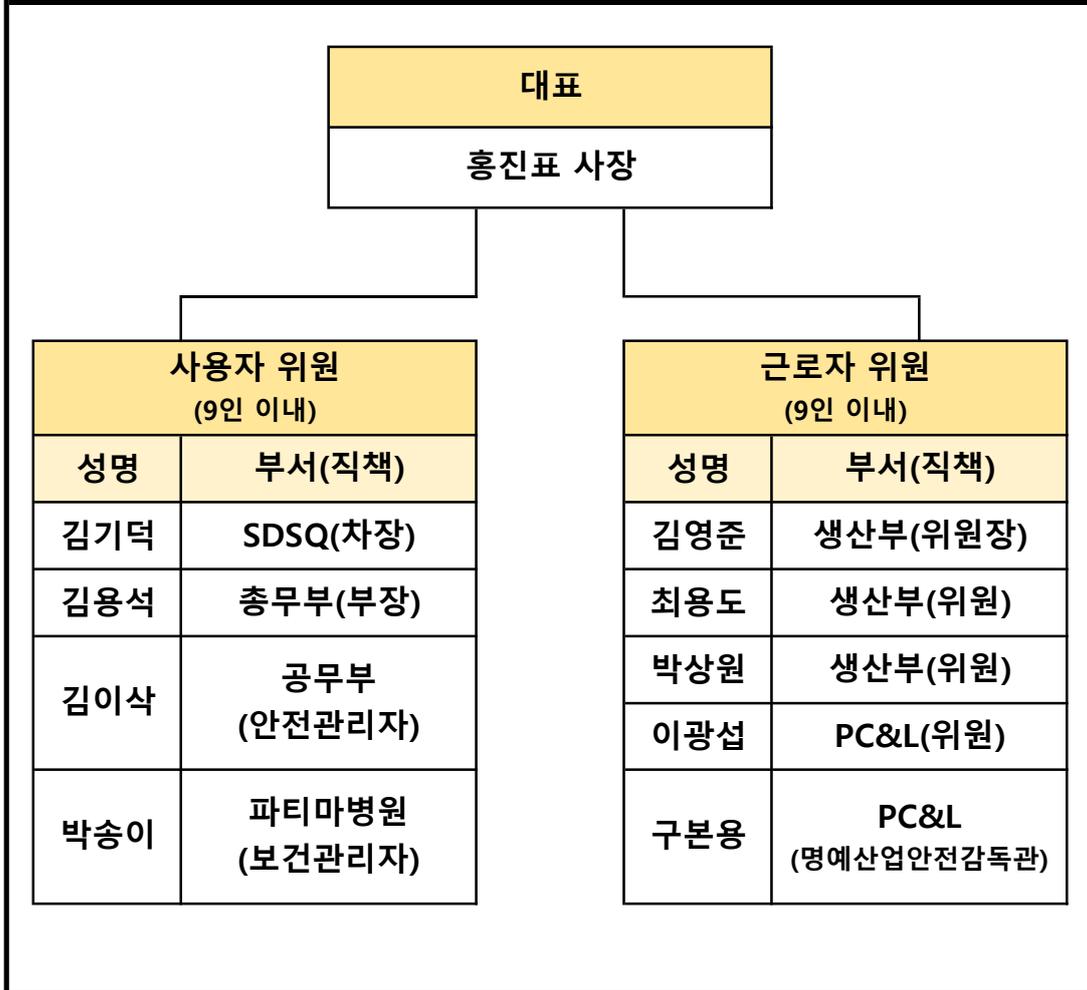
체 계	선 임 기 준	직 무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1차 금속제조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자격: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 ■근거: <u>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u>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u> 및 <u>제26조</u>에 따른 안전 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u>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u>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u>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2조</u>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안전관리 목표 설정 및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 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 감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전 사업장 ■자격: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 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업 지휘·감독 하는 직위에 있는 자 ■근거: <u>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 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다음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6. <u>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u>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으로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사항

<p>안전 관리자</p>	<p>■대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선임</p> <p>■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p> <p>■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p>보건 관리자</p>	<p>■대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선임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보건관리위탁 가능</p> <p>■자격: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p> <p>■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직의 직무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응급 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치료/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장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p>산업 보건</p>	<p>■대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선임 *보건관리 위탁시 선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자격: 「의료법」에 따른 의사</p> <p>■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애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p>명예 산업 안전 감독관</p>	<p>■대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p> <p>■자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 · 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p> <p>■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보건 의식을 복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별표 4】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연간 16시간 이상
신규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별표4. 3-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4. 3-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시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의 1/2 이상 실시 가능

※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시: 해당연도 정기안전보건교육 면제 가능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기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보수	6시간 이상	신규 및 보수 교육 후 2년 이내
안전관리자	신규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보수	24시간 이상	신규 및 보수 교육 후 2년 이내
보건관리자	신규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보수	24시간 이상	신규 및 보수 교육 후 2년 이내

3.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가. 근로자 정기 교육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客的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라.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내용: 3-다 항목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 개별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각 호의 내용

마. 물질안전보건교육자료에 관한 교육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별표 6】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 가. 프레스
 - 나. 전단기 및 절곡기
 - 다. 크레인
 - 라. 리프트
 - 마. 압력용기
 - 바. 롤러기
 - 사. 사출성형기
 - 아. 고소작업대
 -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나.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 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자. 충돌·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나. 안전화
 - 다. 안전장갑
 - 라. 방진마스크
 - 마. 방독마스크
 - 바. 송기마스크
 -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 아. 보호복
 - 자. 작업대
 - 차. 차광 및 비산물 위험장지용 보안경
 - 카. 용접용 보안면
 -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별표 6】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프레스
- 나. 전단기
- 다.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라. 리프트
- 마. 압력용기
- 바. 곤돌라
- 사.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 아.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 자.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 차.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킬로뉴턴 미만은 제외한다)
- 카.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 타. 컨베이어
- 파.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의 주기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별표 7】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

1. 유기화합물(117종)
 - 1)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 2)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 3)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 4)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 5) p-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100-01-6)
 - 6) p-니트로클로로벤젠(p-Nitrochlorobenzene; 100-00-5)
 - 7)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Di(2-ethylhexyl)phthalate; 117-81-7)
 - 8)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25321-14-6 등)(특별관리물질)
 - 9) N,N-디메틸아닐린(N,N-Dimethylaniline; 121-69-7)
 - 10) 디메틸아민(Dimethylamine; 124-40-3)
 - 1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27-19-5)(특별관리물질)
 - 12)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특별관리물질)
 - 13) 디에탄올아민(Diethanolamine; 111-42-2)
 - 14) 디에틸 에테르(Diethyl ether; 60-29-7)
 - 15) 디에틸렌트리아민(Diethylenetriamine; 111-40-0)
 - 16) 2-디에틸아미노에탄올(2-Diethylaminoethanol; 100-37-8)
 - 17) 디에틸아민(Diethylamine; 109-89-7)
 - 18) 1,4-디옥산(1,4-Dioxane; 123-91-1)
 - 19) 디이소부틸케톤(Diisobutylketone; 108-83-8)
 - 20)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1,1-Dichloro-1-fluoroethane; 1717-00-6)
 - 21)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5-09-2)
 - 22) o-디클로로벤젠(o-Dichlorobenzene; 95-50-1)
 - 23) 1,2-디클로로에탄(1,2-Dichloroethane; 107-06-2)(특별관리물질)
 - 24) 1,2-디클로로에틸렌(1,2-Dichloroethylene; 540-59-0 등)
 - 25)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propane; 78-87-5)(특별관리물질)
 - 26)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Dichlorofluoromethane; 75-43-4)
 - 27) p-디히드록시벤젠(p-dihydroxybenzene; 123-31-9)
 - 28) 메탄올(Methanol; 67-56-1)
 - 29) 2-메톡시에탄올(2-Methoxyethanol; 109-86-4)(특별관리물질)
 - 30)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2-Methoxyethyl acetate; 110-49-6)(특별관리물질)
 - 31) 메틸 n-부틸 케톤(Methyl n-butyl ketone; 591-78-6)
 - 32) 메틸 n-아밀 케톤(Methyl n-amyl ketone; 110-43-0)
 - 33) 메틸 아민(Methyl amine; 74-89-5)
 - 34) 메틸 아세테이트(Methyl acetate; 79-20-9)
 - 35)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78-93-3)
 - 36) 메틸 이소부틸 케톤(Methyl isobutyl ketone; 108-10-1)
 - 37) 메틸 클로라이드(Methyl chloride; 74-87-3)
 - 38) 메틸 클로로포름(Methyl chloroform; 71-55-6)

- 39)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101-68-8 등)
- 40) o-메틸시클로헥사논(o-Methylcyclohexanone; 583-60-8)
- 41) 메틸시클로헥사놀(Methylcyclohexanol; 25639-42-3 등)
- 42) 무수 말레산(Maleic anhydride; 108-31-6)
- 43) 무수 프탈산(Phthalic anhydride; 85-44-9)
- 44) 벤젠(Benzene; 71-43-2)(특별관리물질)
- 45)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특별관리물질)
- 46) n-부탄올(n-Butanol; 71-36-3)
- 47) 2-부탄올(2-Butanol; 78-92-2)
- 48) 2-부톡시에탄올(2-Butoxyethanol; 111-76-2)
- 49) 2-부톡시에틸 아세테이트(2-Butoxyethyl acetate; 112-07-2)
- 50) n-부틸 아세테이트(n-Butyl acetate; 123-86-4)
- 51)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106-94-5)(특별관리물질)
- 52)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75-26-3)(특별관리물질)
- 53)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 54) 브이엠 및 피 나프타(VM&P Naphtha; 8032-32-4)
- 55) 비닐 아세테이트(Vinyl acetate; 108-05-4)
- 56)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특별관리물질)
- 57)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8052-41-3)(벤젠을 0.1% 이상 함유한 경우만 특별관리물질)
- 58) 스티렌(Styrene; 100-42-5)
- 59)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 60)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108-93-0)
- 61) 시클로헥산(Cyclohexane; 110-82-7)
- 62) 시클로헥센(Cyclohexene; 110-83-8)
- 63) 아닐린[62-53-3] 및 그 동족체(Aniline and its homologues)
- 64)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75-05-8)
- 65) 아세톤(Acetone; 67-64-1)
- 66)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75-07-0)
- 67)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특별관리물질)
- 68)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79-06-1)(특별관리물질)
- 69) 알릴 글리시딜 에테르(Allyl glycidyl ether; 106-92-3)
- 70) 에탄올아민(Ethanolamine; 141-43-5)
- 71) 2-에톡시에탄올(2-Ethoxyethanol; 110-80-5)(특별관리물질)
- 72)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2-Ethoxyethyl acetate; 111-15-9)(특별관리물질)
- 73) 에틸 벤젠(Ethyl benzene; 100-41-4)
- 74) 에틸 아세테이트(Ethyl acetate; 141-78-6)
- 75) 에틸 아크릴레이트(Ethyl acrylate; 140-88-5)
- 76)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 107-21-1)
- 77)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Ethylene glycol dinitrate; 628-96-6)
- 78) 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Ethylene chlorohydrin; 107-07-3)
- 79) 에틸렌이민(Ethyleneimine; 151-56-4)(특별관리물질)
- 80) 에틸아민(Ethylamine; 75-04-7)
- 81) 2,3-에폭시-1-프로판올(2,3-Epoxy-1-propanol; 556-52-5 등)(특별관리물질)

- 82) 1,2-에폭시프로판(1,2-Epoxypropane; 75-56-9 등)(특별관리물질)
- 83)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106-89-8 등)(특별관리물질)
- 84)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4-88-4)
- 85) 이소부틸 아세테이트(Isobutyl acetate; 110-19-0)
- 86)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lcohol; 78-83-1)
- 87) 이소아밀 아세테이트(Isoamyl acetate; 123-92-2)
- 88) 이소아밀 알코올(Isoamyl alcohol; 123-51-3)
- 89) 이소프로필 아세테이트(Isopropyl acetate; 108-21-4)
- 90)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67-63-0)
- 91)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 92) 크레졸(Cresol; 1319-77-3 등)
- 93) 크실렌(Xylene; 1330-20-7 등)
- 94) 2-클로로-1,3-부타디엔(2-Chloro-1,3-butadiene; 126-99-8)
- 95)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108-90-7)
- 96) 1,1,2,2-테트라클로로에탄(1,1,2,2-Tetrachloroethane; 79-34-5)
- 97) 테트라히드로푸란(Tetrahydrofuran; 109-99-9)
- 98) 톨루엔(Toluene; 108-88-3)
- 99)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
- 100)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
- 101)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121-44-8)
- 102)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67-66-3)
- 103)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79-00-5)
- 104)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특별관리물질)
- 105) 1,2,3-트리클로로프로판(1,2,3-Trichloropropane; 96-18-4)(특별관리물질)
- 106)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127-18-4)(특별관리물질)
- 107) 페놀(Phenol; 108-95-2)(특별관리물질)
- 108) 페닐 글리시딜 에테르(Phenyl glycidyl ether; 122-60-1 등)
- 109)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0-0)(특별관리물질)
- 110) 프로필렌이민(Propyleneimine; 75-55-8)(특별관리물질)
- 111) n-프로필 아세테이트(n-Propyl acetate; 109-60-4)
- 112) 피리딘(Pyridine; 110-86-1)
- 113)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822-06-0)
- 114) n-헥산(n-Hexane; 110-54-3)
- 115) n-헵탄(n-Heptane; 142-82-5)
- 116) 황산 디메틸(Dimethyl sulfate; 77-78-1)(특별관리물질)
- 117) 히드라진[302-01-2] 및 그 수화물(Hydrazine and its hydrates)(특별관리물질)
- 118) 1)부터 117)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N,N-디메틸아세트아미드(특별관리물질), 디메틸포름아미드(특별관리물질), 2-메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1-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2-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2-에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및 페놀(특별관리물질)은 0.3%, 그 밖의 특별관리물질은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금속류(24종)

- 1) 구리[7440-50-8] 및 그 화합물(Copper and its compounds)
-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특별관리물질)

- 3) 니켈[7440-02-0]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카르보닐
(Nickel and its inorganic compounds, Nickel carbonyl)(불용성화합물만 특별관리물질)
 - 4)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5) 바륨[7440-39-3] 및 그 가용성 화합물(Barium and its soluble compounds)
 - 6) 백금[7440-06-4] 및 그 화합물(Platinum and its compounds)
 - 7) 산화마그네슘(Magnesium oxide; 1309-48-4)
 - 8) 셀레늄[7782-49-2] 및 그 화합물(Selenium and its compounds)
 - 9) 수은[7439-97-6] 및 그 화합물(Mercury and its compounds)
(특별관리물질. 다만, 아릴화합물 및 알킬화합물은 특별관리물질에서 제외한다)
 - 10) 아연[7440-66-6] 및 그 화합물(Zinc and its compounds)
 - 11) 안티몬[7440-36-0] 및 그 화합물(Antimony and its compounds)
(삼산화안티몬만 특별관리물질)
 - 12) 알루미늄[7429-90-5] 및 그 화합물(Aluminum and its compounds)
 - 13) 오산화바나듐(Vanadium pentoxide; 1314-62-1)
 - 14) 요오드[7553-56-2] 및 요오드화물(Iodine and iodides)
 - 15) 은[7440-22-4] 및 그 화합물(Silver and its compounds)
 - 16)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13463-67-7)
 - 17) 인듐[7440-74-6] 및 그 화합물(Indium and its compounds)
 - 18) 주석[7440-31-5] 및 그 화합물(Tin and its compounds)
 - 19) 지르코늄[7440-67-7] 및 그 화합물(Zirconium and its compounds)
 - 20) 철[7439-89-6] 및 그 화합물(Iron and its compounds)
 - 21)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its compounds)(특별관리물질)
 - 22) 코발트[7440-48-4] 및 그 무기화합물(Cobalt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23) 크롬[7440-47-3] 및 그 화합물(Chromium and its compounds)
(6가크롬 화합물만 특별관리물질)
 - 24) 텅스텐[7440-33-7] 및 그 화합물(Tungsten and its compounds)
 - 25) 1)부터 24)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납 및 그 무기화합물(특별관리물질), 수은 및 그 화합물
(특별관리물질. 다만, 아릴화합물 및 알킬화합물은 특별관리물질에서 제외한다)은 0.3%, 그 밖의
특별관리물질은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3. 산·알칼리류(17종)
- 1) 개미산(Formic acid; 64-18-6)
 - 2)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7722-84-1)
 - 3) 무수 초산(Acetic anhydride; 108-24-7)
 - 4)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7664-39-3)
 - 5) 브롬화수소(Hydrogen bromide; 10035-10-6)
 - 6) 수산화 나트륨(Sodium hydroxide; 1310-73-2)
 - 7) 수산화 칼륨(Potassium hydroxide; 1310-58-3)
 - 8) 시안화 나트륨(Sodium cyanide; 143-33-9)
 - 9) 시안화 칼륨(Potassium cyanide; 151-50-8)
 - 10) 시안화 칼슘(Calcium cyanide; 592-01-8)
 - 11) 아크릴산(Acrylic acid; 79-10-7)
 - 12)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7647-01-0)
 - 13) 인산(Phosphoric acid; 7664-38-2)
 - 14) 질산(Nitric acid; 7697-37-2)

- 15) 초산(Acetic acid; 64-19-7)
 - 16) 트리클로로아세트산(Trichloroacetic acid; 76-03-9)
 - 17) 황산(Sulfuric acid; 7664-93-9)(pH 2.0 이하인 강산은 특별관리물질)
 - 18) 1)부터 17)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특별관리물질은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 1) 불소(Fluorine; 7782-41-4)
 - 2) 브롬(Bromine; 7726-95-6)
 - 3)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특별관리물질)
 - 4) 삼수소화 비소(Arsine; 7784-42-1)
 - 5) 시안화 수소(Hydrogen cyanide; 74-90-8)
 - 6) 암모니아(Ammonia; 7664-41-7 등)
 - 7) 염소(Chlorine; 7782-50-5)
 - 8) 오존(Ozone; 10028-15-6)
 - 9)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10102-44-0)
 - 10) 이산화황(Sulfur dioxide; 7446-09-5)
 - 11) 일산화질소(Nitric oxide; 10102-43-9)
 - 12)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 13) 포스겐(Phosgene; 75-44-5)
 - 14) 포스핀(Phosphine; 7803-51-2)
 - 15)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7783-06-4)
- 16) 1)부터 15)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특별관리물질은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비고: '등'이란 해당 화학물질에 이성질체 등 동일 속성을 가지는 2개 이상의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1. 금지표지	101 출입금지	102 보행금지	103 차량통행금지	104 사용금지	105 탑승금지	106 금연
						
107 화기금지	108 물체이동금지	2. 경고표지	201 인화성물질 경고	202 산화성물질 경고	203 폭발성물질 경고	204 급성독성물질 경고
						
205 부식성물질 경고	206 방사성물질 경고	207 고압전기 경고	208 매달린 물체 경고	209 낙하물 경고	210 고온 경고	211 저온 경고
						
212 몸균형 상실 경고	213 레이저광선 경고	214 발암성·변이 원성·생식독 성·호흡기 과 민성 물질 경고	215 위험장소 경고	3. 지시표지	301 보안경 착용	302 방독마스크 착용
						

303 방진마스크 착용	304 보안면 착용	305 안전모 착용	306 귀마개 착용	307 안전화 착용	308 안전장갑 착용	309 안전복 착용
						
4. 안 내 표 지	401 녹십자표지	402 응급구호표지	403 들 것	404 세안장치	405 비상용기구	406 비상구
						
407 좌측비상구	408 우측비상구	5. 관계자의 출입금지	501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502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관계자의 출입금지 (허가물질 명칭) 제조/사용/보관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관계자의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503 금지대상물질의 취급실험실 등		6. 문자추가시 예시문	▶ 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의 실수로써 동료를 해치지 않도록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회사의 재산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의 방심과 불안정한 행동이 조국의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관계자의 출입금지 발암물질 취급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일반작업안전허가서

업체명				현장책임자/연락처	/			
작업일시	20	년	월	일	작업시간			
작업내용								
작업장소								
신청부서				직급			성명	(서명)

작업 종류	공통(필수)		보충작업(수행 시 체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작업	<input type="checkbox"/> 화기작업	<input type="checkbox"/> 정전작업	<input type="checkbox"/> 고소작업	<input type="checkbox"/> 방사선작업	<input type="checkbox"/> 굴착작업	<input type="checkbox"/> 밀폐작업	<input type="checkbox"/> 중장비작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통 (일반작업)	확인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화기작업					확인	해당 없음		
안내표지판 등 작업구역 설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화기 배치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작업 주위 위험요인 제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불꽃, 불티 비산방지조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위 인화성물질 제거 상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안전 교육 실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가스농도 측정 및 잔류물질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작업장소 환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현장 안전담당 배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재감시자 배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정전작업	확인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고소작업					확인	해당 없음		
주 전원 차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작업 발판 및 안전 난간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작업자의 자격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작업안내 표지판 설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추락방지조치 확인(추락방호망, 안전대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잠금장치 시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인 1조 작업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방사선작업	확인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굴착작업					확인	해당 없음		
방사선 위험 표지 설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하 매설물 확인(가스, 소방, 통신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인가자 출입 금지 조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접 지역 붕괴 예방조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작업자의 자격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방사선 방사점 도면 첨부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작업자의 자격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밀폐작업	확인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중장비작업					확인	해당 없음		
2인 1조 작업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현장책임자 지정 및 상주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작업 신호자 지정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중장비 안전장치 정상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환기 및 배기장치 조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상 및 노면 상태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가스농도 측정 확인 · O ₂ : 18%이상 23.5%미만 · CO:30ppm미만 · CO ₂ :1.5%미만 · H ₂ S: 10ppm 미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변 장애물 및 전선, 설비 간섭 여부 관계자 외 출입통제 조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가스농도 측정	작업 전	물질명	결과	측정기간	측정자	작업 후	물질명	결과	측정기간	측정자	
필요 안전기구	안전모 <input type="checkbox"/> 안전화 <input type="checkbox"/> 보안경 <input type="checkbox"/> 귀마개/귀덮개 <input type="checkbox"/> 공기호흡기 <input type="checkbox"/> 방독마스크 <input type="checkbox"/> 방진마스크 <input type="checkbox"/> 소화기 <input type="checkbox"/> 고무장갑 <input type="checkbox"/> 고무장화 <input type="checkbox"/> 안전대 <input type="checkbox"/> 방열복 <input type="checkbox"/> 용접보안면 <input type="checkbox"/> 사다리 (일자형 사다리 사용 금지) <input type="checkbox"/>										
안전작업 확인	확인자	<input type="checkbox"/> 현장 확인 결과 이상 없음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공사에 대한 작업을 허가함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공사에 대한 위험요인 및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 하였음										
	부서(소속업체)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 연장	20 년 월 일 일 시 ~ 20 년 월 일 일 시 승인자 : (서명)										
주의 사항	1. 작업허가서는 발행 시 해당 작업에 대해 최대 8시간 유효 2. 안전보호구 미착용 및 안전조치 지시 불이행 사항은 작업 중지 및 작업허가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3. 안전교육 미이수 및 작업허가서 미발행 시 작업 불가										

【별표 10】

Process 관리자	안전관리자	관리부서	공무
관련부서	전체부서		
적용범위	당사에서 수행되는 화기, 전기, 입조, 고소, 위험, 굴토, 일반 작업 등에 적용한다.		
목적	당사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에 대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후 작업허가서를 발행함으로써 예상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 부 내 용			
<p>1. 용어의 정의</p> <p>1-1. 화기작업</p> <p>1) 용접, 절단, 가열, 납땀, 그라인딩 등 직접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모든 작업.</p> <p>2) 드릴링, 쇠틀, 연마 등으로 인해 간접열이 발생하는 작업.</p> <p>1-2. 입조작업</p> <p>유해, 위험물질의 체류 또는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용기나 제한공간에 출입하여 하는 작업.</p> <p>1) 탱크, 하수구 등.</p> <p>2) 깊이가 1.2m 이상 되는 피트 등.</p> <p>3) 기타 산소가 희박하다고 예상되는 구역.</p> <p>1-3. 위험작업</p> <p>고압가스, 위험물, 유독물 등 작업자에게 비산 또는 흡입 시 화상, 중독, 강한 자극을 즉시 유발하는 물질의 취급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p> <p>1-4. 전기작업</p> <p>전기로 인한 전기기기의 사고 및 작업 시 작업자의 감전위험이 예상되는 작업</p> <p>1) 전기설비(변압기, 비상발전기, 배전반, 분전반 등)의 유지보수 작업.</p> <p>2) 동력기계, 기구의 전원설치 및 해체작업.</p> <p>3) 임시동력설비 사용 및 30V 이상의 전원 사용으로 전기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p> <p>1-5. 고소작업</p> <p>지면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작업자 발높이 기준)되는 곳에서 수행하는 작업</p> <p>1-6. 굴토작업</p> <p>지면으로부터 깊이 30cm 이상 땅을 파는 작업</p> <p>1-7. 일반작업</p> <p>상기 1.1~1.6항의 작업을 제외한 각종 정비, 보온, 운반, 세척, 중량물 작업 등의 일반작업.</p> <p>*중량물작업: 크레인류 및 지게차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작업</p> <p>1-8. 안전관리자</p> <p>당사의 환경안전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원으로 화기, 입조,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자의 안전조치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의 안전관리 제반활동을 수행함</p>			